

감염병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오픈넷과 프라이버시

- 오픈넷은 온라인 상의 ‘익명성’이 기술적으로 쉽게 우회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개인의 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정부나 기업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통신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3법, N번방 방지법 등 각종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련 활동 수행)

-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감시, 관찰 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오픈넷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사전적 의미

-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 (표준국어대사전)
- Privacy: A state in which one is not observed or disturbed by other people, more specifically the state of being free from public attention (Oxford English Dictionary)
- Privacy: If you have privacy, you are in a place or situation which allows you to do things without other people seeing you or disturbing you. (Collins English Dictionary)

Cf.) 18세기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 20세기 중반부터 빈도 증가

공(public)과 사(private)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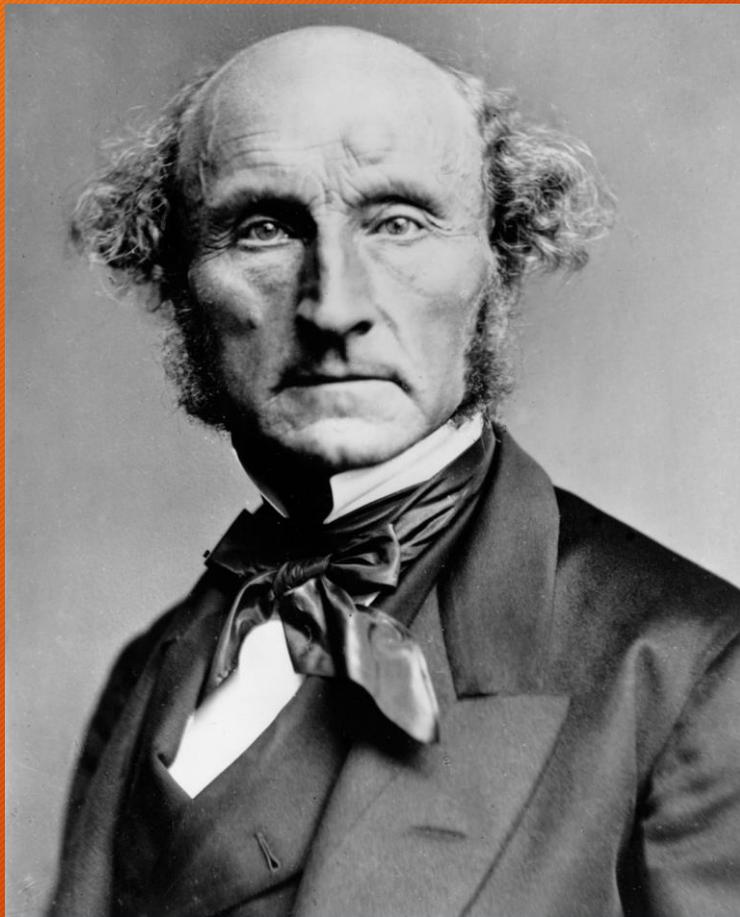
-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E): 개인적 삶을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polis)과 가족과 함께 하는 사적 영역(oikos)으로 양분
- 이 구별에서 중요한 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서로 다른 관습과 규범이 적용된다는 ('덕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덕의 실천 과정에서) 점이 강조될 뿐 사적 영역의 '보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공유 자원과 개인 소유권의 구별

- 존 로크(1632~1704): 소유권의 관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
-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물이 '공동 소유'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자연물에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그 대상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이 발생한다.
- 질문) 개인에 대한 정보(개인적 정보가 아니라)를 개인이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가?



국가에 의한 지배와 자율 규제와의 구별



-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자유론>에서 밀은 합리적 개인의 자율적 판단(특히 자신의 행복과 관련된)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
- "개인의 행동 중에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에 한하며,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행동은 '권리에 의하여' 개인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 질문) 프라이버시의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없을까?

공개적인 영역과 내밀한 영역의 구별

- 마가렛 미드(1901~1978): 미드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다수의 공개적 접근이 허용되는 공적 영역과 달리 사적 영역은 숨겨진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된 의식에 참여하는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 즉 사적인 영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이 홀로 향유하는 내밀한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Cf.) Warren and Brandels' right to be let alone (1890)



프라이버시, 이익 혹은 권리

- 이처럼 역사적으로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지만, 프라이버시가 공적 영역과 구별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며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개인 혹은 사적 영역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할 이익(interests)인지, 그것을 넘어 보장되어야 할 권리(right)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포스너와 같은 법학자는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보장할 경우 개인의 이익을 구현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분명한 점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프라이버시보호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기에서야 널리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 또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부작용(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COVID19 사태에 대한 다른 대응

- ▶ 세계적 수준의 재난이 되어버린 COVID19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 특히, 한국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식과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도시나 지역 전체에 대해 개인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식이 비교되었다.
- ▶ 각각의 대응방식을 채택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다른 방식을 택한 나라의 방식은 지나친 개인의 기본권 침해도 간주되었다.
- ▶ 이런 반응 자체는 각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권리 직관’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 방식이 옳고 다른 방식이 그르다고 보기 어렵다. 단 어떤 방식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마스크, 프라이버시와 정체성 정치



-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기 전에 ‘마스크를 쓸 권리’에 대한 투쟁이 홍콩 시위대를 중심으로 2019년 후반기에 벌어졌다. 이는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홍콩 당국에 의한 감시 및 체포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 COVID-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스크를 쓴 동양인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스크를 자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기술적 장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제언

-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 권리가 다른 권리를 항상 압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프라이버시는 다른 권리, 특히 사회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 결국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당연히 객관적 참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권 영역마다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직관, 사회정치 환경 등을 고려하는 담론 형성과 제도적 결정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 COVID-19과 같은 세계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 시대는 이런 구성 과정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당위와 시급함을 제시한다.

Cf.)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https://opennet.or.kr/18131>)

감사합니다!

